

제347회 임시회  
2016. 4. 27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장선배 의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-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3. 개정이유

-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개정( '15. 2. 3)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여성정책관에서 행정부지사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며,
-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위원 중 기존 ‘소관 상임위원회 위원’을 ‘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’로 개정하고,
- 그 밖에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, 문구수정 및 불필요한 항을 삭제함.

4. 주요내용

-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변경을 통한 위원회 위상 제고 (안 제10조 제1, 2항)
  - 위원장 : 여성정책관 → 행정부지사
  - 당연직 위원 : 예산담당관 등 → 기획관리실장
-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 (안 제10조 제3항)

## 5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에 제정되었음.
- 성별영향분석평가제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되었고, 정부합동평가(정성지표)에도 반영되고 있지만, 아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실·국의 관심도는 낮은 상태임.
- 따라서, 동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실·국 관심도를 제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,
  -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여성정책관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시키고,
  - 당연직 위원을 과장급(여성정책관, 예산담당관, 법무통계담당관, 여성발전센터 팀장)에서 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으로 변경하였음.
  -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고,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해당 실·국에 권고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, 동 개정조례안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·국 관심도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.
  - 또한, 이미 타 시·도의 경우 대부분 위원장을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역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.
- 또한, 현행 조례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, 이는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(대통령령) 제7조에 위배된다고 보여 지는 바, 이를 “당연직”에서 “위촉직”으로 변경하고, “소관 상임위원회 의원”을 “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”로 변경하였음.

- 안 제7조에서는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9조제2항의 개정예 따라 “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는 임의적 규정을 강제 규정인 “~ 반영하여야 한다”로 변경하였음.

※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(분석평가결과의 반영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착과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며,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 참고자료 :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관련 타 시도 조례 현황 >

시·도	근거	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			
		위원장	실국장(당연직)	시·도의원 (당연직)	시·도의원 (위촉직)
서울특별시	성평등기본조례 (성평등위원회)	시장	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, 기획·경제·복지 등 업무 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	-	-
부산광역시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양성평등기본조례 (양성평등위원회)	행정부시장	기획관리실장 기획행정관, 여성가족국장	-	-
대구광역시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위원 중 호선	여성가족정책관	-	○
인천광역시	여성발전 기본 조례 (여성발전위원회)	행정부시장	여성가족국장	-	-
광주광역시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행정부시장	정책기획관, 행정지원과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담당관, 법무담당관	-	○
대전광역시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정무부시장	기획조정실장,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	-	○
울산광역시	양성평등기본조례 (성별위원회)	위원 중 호선	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	-	-
경기도	성평등기본조례 (성평등위원회)	도지사	기획, 예산, 인사, 경제, 문화, 도시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	-	○
강원도	양성평등기본조례 (양성평등위원회)	위촉직 중 호선	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 기획·경제·복지 등 업무담당 국장급 이상 7명 이내	-	○
충청북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분석평가책임관	여성정책관,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, 성별센터장 서관 상임위 의원	○	-
충청남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위원 중 호선	여성가족정책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	-	○
전라북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행정부지사	4급이상 관계 공무원 (위촉직)	-	○
전라남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양성평등기본조례 (양성평등위원회)	행정부지사	기획조정실장(당연) 여성가족정책관(위촉)	-	-
경상북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양성평등기본조례 (양성평등위원회)	행정부지사	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관	-	-
경상남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위원 중 호선	분석평가책임관 성별센터장, 예산담당관	-	○
제주특별자치도	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(성별위원회)	위원 중 호선	분석평가책임관 예산담당관	-	○